

1. 원칙

- 1) 모든 교회 재무행정에 관한 정책은 재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, 교회 회계는 재정위원회가 지시하는대로 시행한다.
- 2) 현금 유동이 잘 안될 때 지급 우선 순위는 회계가 아니라 재정위원회나 합동임원회가 결정하여야 하며, 회계는 그 지시에 응한다.
- 3)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, 회계의 유고시 그 책무를 대행한다.

2. 역할

- 1)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긴다.
- 2) 특별현금은 지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인식한다.
- 3) 연회 회계와 분담금을 낼 절차를 상의하여 정기적으로 연회 본부에 우송한다.
- 4) 교회에 예비금이 마련되어 있으면, 그 예비금이 경상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인식한다.
- 5) 구역회, 합동임원회, 재정위원회 회원이 된다.
- 6) 재정위원장, 재무서기와 함께 일한다.
- 7)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, 재정위원회가 지시하는 것만 지급한다.
- 8) 현금지출은 회계가 하지만, 수표에 몇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가 결정함을 인식한다.
- 9) 재무서기로부터 예금한 영수증을 받는다.
- 10) 재정과 관련된 정책은 재정위원장과 상의 되어야 한다.
- 11) 담임목사와 재정 문제에 관해서 수시로 상의한다.

3. 관계

- 1) 교회 회계와 재무서기와의 관계
 - a. 회계는 재무서기의 보고를 매주 받아 기록해 놓는다.
 - b. 그 보고서는 현금 총액과 종류 등이 기록되어 있다.
 - c. 수시로 서기의 장부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.
- 2) 교회 회계와 재정위원장과 관계
 - a. 재무처리에 있어 의문점이 있으면 재정위원장과 의논한다.
- 3) 교회 회계와 연회 회계와의 관계
 - a. 연회 회계와 연락하여 선교 분담금 지불에 관한 절차 등을 의논한다. 교단의 소경 양식을 구비한다.

4) 교회 회계와 담임목사와의 관계

- a. 담임목사는 우리교회의 최고 행정책임자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늘 상의하고 정기적으로 그에게 보고해야 한다.

5) 교회 회계와 IRS와의관계

- a. 정부의 세법에 관하여 CPA에게 자문을 얻어 필요한 보고 요령을 알아 두도록 한다.

4. 임기

3년으로 한다.